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NTS Liquor License Support Center

CONTENTS 목 차

I 주류의 정의 및 종류

1. 용어 정의	10
2. 주류의 정의	12
3. 주류의 종류	12
4. 주류의 종류별 세부내용	13

II 주류 제조면허 신청

1. 면허유형	26
2. 취득 절차	27
3. 신청 시 구비서류	28

III 주류제조장 시설기준

1. 제조장 공통사항	32
2. 주류별 시설기준	33
3. 시설기준 충족을 위한 주의사항	38

IV 제조관리

1. 제조방법 신청	44
2. 분석감정 의뢰	45
3. 주류의 위탁제조	49
4. 주류제조장내 시음주의 제조	49

V 판매관리

1. 상표 신고	54
2. 납세증명표지의 사용	55
3. 주류의 유통	56
4. 주류의 통신판매	60
5. 과세표준 및 세율	61

VI 기타 안내

1. 주요 처벌사항	66
2. 세무 안내	69
3. 식품위생법 관련사항	70
※ 주류 제조장 현장확인 안내	73

주세법령 개정 주요내용

2026년 주세법령 개정 주요 내용

■ 주세법 개정 주요 내용

- 과실주의 품질 향상 및 제품 다양화를 위하여 과실주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에 아라비아검, 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추가(주세법 시행령 별표1)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주요 내용

- 증류주류 및 기타주류(‘라’목, ‘마’목)중 알코올분 8.5% 이하 및 불휘발분 2도 이상인 주류로서 전통주 경감세율을 적용받지 않는 주류에 대해 주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의2, 제113조의3)
 - 2028.12.31.까지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과세대상 수량 중 먼저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400킬로리터 이하의 것에 대하여 「주세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70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율을 적용

■ 고시 개정 주요 내용

- 국가 등이 전통주 홍보를 위해 주관하는 행사에서 소매업자가 시음주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전통주 체험 기회 제고(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 전통주의 납세증명표지 부착 의무를 주세 감면 대상 수량까지 완화 및 소규모주류의 경우 최초 면허일의 다음 분기까지 부착의무를 유예(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
- 「주세법 시행령」제5조의2에서 국제청장에 위임한 기준판매비율 조정(기준판매비율 고시 제3조)

2025년 주세법령 개정 주요 내용

■ 주세법, 주류면허법 개정 주요 내용

- 경감세율 적용대상 주류의 연간 제조량 기준을 완화하고 경감세율 적용대상 주류의 반출 수량을 확대하여 전통주 산업 육성을 지원(주세법 제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나무통 숙성하는 모든 주류는 검정 수량을 기준으로 인정하는 실감량 외에 추가로 실감량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인정 범위를 연간 ‘100분의 20내’에서 ‘100분의 40내’로 확대(주세법 시행령 제10조)
- 살균하지 않은 탁·약주외에 소규모주류제조자 및 경감세율적용대상 요건을 충족한 전통주 제조자가 생산하는 발효주의 알코올분 도수 허용오차 확대(주세법 시행령 별표2)
 - 최종제품에 표시된 알코올분 도수의 +0.5도 추가 허용
- 소규모주류 발급대상 주종에 증류식소주, 위스키, 브랜디 추가(주류면허법 시행령 별표1)
 - 농산물을 사용·발효한 경우로 한정하며, 주정 등 증류원액을 이용한 제조는 제외
- 납세병마개 제조자를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주류면허법 시행령 제30조)

■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 주요 내용

- 체육시설, 축제장 등 한정된 공간내에서 그 면허신청 목적에 맞게 판매장소 및 면허기간을 지정하는 기타소매업면허 신설(제12조)
- 주류산업 수출지원을 위해 수출용 위스키·브랜디 등의 나무통 저장·숙성 기간 확인 절차 신설(제132조의2)
- 종이팩·페트병 용기 주류의 “가정용” 용도 구분을 폐지하여 납세협력비용 감축(제49조)
- 주류 제조장의 시설 구분을 명확히 하여 납세자의 혼선방지(제32조)
 - 주류 제조장은 교육장, 판매장소 등 시설과 벽이나 층 등으로 명확하게 분리(다만, 사무공간의 경우 파티션 등을 사용하여 분리할 수 있음)

2024년 주세법령 개정 주요 내용

■ 주세법, 주류면허법 개정 주요 내용

- 종가세대상 국산 주류에 대한 기준판매비율 시행(주세법 시행령 제5조, 제5조의2)
- 탁주·맥주 주세율을 탄력세율 제도로 전환(주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을 각각 1킬로리터당 4만4400원 및 88만5700원으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기본 세율의 $\pm 30\%$ 범위 내에서 탄력적 세율 조정
- 생맥주 주세율 경감제도 일몰 기한을 2026.12.31.까지 연장(주세법 제8조 제1항)
- 다양한 주류 제조를 지원하기 위해 맥주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에 빵, 다랑어포, 굴 추가(주세법 시행령 제3조, 별표1)
- 주세 포탈 기준금액 상향으로 제조면허 취소 기준 현실화(주류면허법 제13조)
 - 탁주 500만원, 맥주 2천만원, 증류주·주정 1천만원, 기타 발효주류 등 500만원
-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 사유가 아닌 주류 가공·조작의 범위 명확화(주류면허법 제12조의2)
 - 「식품위생법」상 음주가 허용된 영업장소에서의 단순 가공·조작은 취소 사유에서 제외

■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 주요 내용

-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주류제조자의 직매장에서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 등에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 확대(별지 제28호 서식 사업범위)

2023년 주세법령 개정 주요 내용

■ 주세법, 주류면허법 개정 주요 내용

- 소주에 첨가하는 당분은 제성 과정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규제 합리화(주세법 시행령 별표1)
- 특정주류도매업자 간 전통주 거래 허용(주류면허법 시행령 제8조)
- 직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신규사업자 등은 소규모 경품을 제공할 수 없었으나 최초 매출 분기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소규모 경품을 제공할 수 있는 기준 마련(주류면허법 시행령 제41조)

2022년 주세법령 개정 주요 내용

■ 주세법, 주류면허법 개정 주요 내용

- 맥주 제조시 과실 첨가량을 기존 '맥주재료 합계중량(발아된 맥류+녹말이 포함된 재료)의 100분의 20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발아된 맥류 중량의 100분의 50이하' 기준을 추가하여 맥주의 과실 첨가량 기준 완화(주세법 시행령 별표3)
-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 조미식품의 범위 명확화(주세법 시행령 제2조)
 - 법 별표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주류 중 불휘발분 30도 이상인 것으로서 다른 식품의 조리과정에 첨가하여 풍미를 증진시키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된 식품으로 한정
- 「주세법 시행령」제2조 제2항에 따른 주류의 담금·저장·제성 용기는 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 하도록 예외 허용(주류면허법 시행령 별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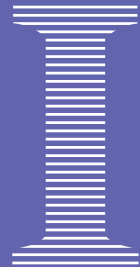
2021년 주세법령 개정 주요 내용

■ 주세법, 주류면허법 개정 주요 내용

- 주류 위탁 제조를 허용(동일주종)하여 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주류면허법 제3조, 제6조)
- 소규모주류제조자 등에 대한 과세표준 특례 적용 시 위탁 제조 주류 제외(주세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 제조장 방문객에게 판매가 아닌 무상 제공 목적으로 첨가물을 섞는 등 제조면허 외의 주류를 제조한 경우 면허 대상 주류로 보지 않음(주류면허법 제3조)
- 경미한 주류 제조방법 변경은 기존 승인 절차 없이 신고 가능(주류면허법 시행령 제37조)

■ 고시,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 주요 내용

- 탁주·약주의 판매용기 제한 용량을 2ℓ이하에서 5ℓ이하로 완화하여 제품의 다양화 지원(주세사무처리규정 제45조)
- 납세증명표지 부착의무가 있는 탁·약주 판매 용기 규격을 5ℓ초과한 경우로 완화(주세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2조)
- 전통주 제조자의 통신판매 홈페이지 수 제한 폐지(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
 - 통신판매를 웹사이트 개수에 관계없이 허용하여 통신판매 수단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폐지
- 주류 제조방법 승인없이 신고로 대체할 수 있게 됨에 따라(주류면허법 시행령 제37조) 경미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조방법 신고서 처리 절차 마련(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수량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5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38조의2)
- 두 종류 이상의 주류를 제조하거나 주류 외 제품을 생산하는 등 제조시설의 공동이용을 위해 필요한 세척 전문설비의 정의 및 요건을 명확화하여 납세자 혼란 방지(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31호)
 - '세척 전문설비'란 탱크, 연결파이프 등을 분해하지 않고 세정액으로 설비 내부를 세척하는 정지세척(CIP)방식 또는 그 이상의 세척능력을 갖춘 설비



CHAPTER

주류의 정의 및 종류



I

주류의 정의 및 종류



1. 용어 정의

용어	내용	근거법령
알코올분	전체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에틸알코올(섭씨 15도에서 0.7947의 비중을 가진 것)	주세법 제2조
주류의 규격	원료의 사용량, 재료의 종류 및 비율, 알코올분 및 불휘발분의 함량 등 주류의 종류의 구분하는 기준	주세법 제2조
불휘발분	전체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휘발되지 아니하는 성분	주세법 제2조
주조연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주세법 제2조
여과	그 방법에 관계없이 술덧 또는 알코올분을 함유하는 물료에서 고형분을 분리·제거하는 모든 조작	주세법 통칙 5-3...4
증류	술덧, 그 밖의 발효액에 열을 가하여 발생한 증기를 냉각하여 알코올을 응축액화(凝縮液化)하는 모든 조작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증류를 포함	주세법 통칙 5-3...4
연속식증류	알코올 함유물을 연속으로 공급하면서 알코올을 연속하여 증류하는 조작	주세법 통칙 5-3...4
제성	주류의 품목별로 신고한 제조방법에 따라 여과, 증류, 혼합 할 수 있는 주류를 투입한 후 물이나 그 밖의 첨가재료를 넣어 최종 제품을 제조하는 행위	주세법 통칙 5-3...4
포탈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의 납부를 회피하거나 조세를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것	주세실무 제1장 제4절
납세의무자	·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 주류를 수입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자	주세법 제3조
일반탁주	살균탁주 이외의 탁주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용어	내용	근거법령
공업용주정	국가의 화학 제조용, 연초발효용, 연료용, 의료 의약품용, 주세법시행령 별표4의 52개 면세품목 제조에 사용하거나 식용 이외에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주정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합성주정	에틸렌을 원료로 하여 합성의 방법으로 제조한 주정	주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조주정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 직접 음용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용할 수 있는 주정	주세법 제2조
보충면허	주류제조의 면허자 전원이 그 면허를 자진 취소하고 그에 대체하여 전 면허장소에 전 면허종목을 면허하는 것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시험제조면허	주류를 시험하기 위하여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제조 사유가 정당한 경우에 면허요건 중 제조시설 요건에도 불구하고 제조기간 및 제조수량을 지정하여 면허하는 것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실수요자	주류를 직접 소비하기 위한 일반 구매자(소비자) 또는 자기의 사업에 원재료 또는 중간재로서 주류를 사용하기 위해 주류를 구입하는 자로서 주류 자체를 직접 판매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자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세척전문설비	탱크, 연결파이프 등을 분해하지 않고 세정액으로 설비 내부를 세척하는 정지세척(CIP) 방식 또는 그 이상의 세척 능력을 갖춘 설비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직매장	주류의 제조자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주류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로서 면허 시에 사업범위를 직매장으로 지정받은 장소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하치장	주류의 제조자가 직접 생산한 주류와 주류판매업자가 직접 구입한 주류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춘 장소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기준판매비율	주류의 종류 및 주류제조자의 판매 방식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판매비용 등을 고려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제청장이 고시하는 비율	주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살균	세균, 효모, 곰팡이 등 미생물의 영양 세포를 65℃ 이상에서 30분간 가열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가열하는 것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2. 주류의 정의

근거법령 주세법 제2조, 영 제2조

- 주정 :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
- 조주정 : 불순물이 포함되어 직접 음용할 수 없으나 정제하면 음용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
-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용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
- 제조 원료가 용기에 담긴 상태로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후 추가적인 원료 주입 없이 용기 내에서 발효되어 최종적으로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가 되는 것

⊕ 주류에서 제외되는 것

- ▶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
- ▶ 희석하여도 음료로 할 수 없는 것
- ▶ 「주세법」 별표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주류 중 불휘발분 30도 이상인 것으로서 다른 식품의 조리과정에 첨가하여 풍미를 증진시키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된 식품

3. 주류의 종류

근거법령 주세법 제5조

구분	내용
주정	주정
발효주류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일주
증류주류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기타주류

4. 주류의 종류별 세부내용

근거법령 주세법[별표], 영[별표1][별표2][별표3],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탁 주

개요	① 쌀, 밀, 고구마 등 녹말이 포함된 재료(발아곡류 제외)와 국(입국, 누룩 등)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② 당분, 과실·채소류 추가사용 가능
제조기준	① 녹말재료, 당분, 과실, 채소류 등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 녹말재료는 50% 이상 사용 ▶ 과실·채소류는 20% 이하 사용 예1) 쌀 45, 과실 15, 물엿 40을 사용할 경우 → 녹말재료 사용량 미달 예2) 쌀 70, 과실 30을 사용할 경우 → 과실 사용량 초과 ② 알코올분 규격 : 표시도수의 ± 0.5도 이하 (생탁주, 경감세율적용기준을 충족한 전통주, 소규모주류제조자의 경우 $+0.5$도 추가허용)
첨가재료	▶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효소처리스테비아, 사카린나트륨, 젖산, 주석산, 구연산, 아미노산류, 수크랄로스, 토마틴, 아세설팜칼륨, 에리스리톨, 자일리톨, 산탄검,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당분, 알룰로오스, 식물(단식물을 주정으로 추출할 경우 주정의 함유량이 해당 주류의 5%이하일 것)

식품위생법에 따른 규격

- ▶ 메탄올(mg/mL) : 0.5 이하
- ▶ 보존료(g/kg) : 소브산으로 0.2 이하의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 ▶ 대장균군 : $n=5, c=2, m=0, M=10$ (살균제품에 한함)
- ▶ 대장균 : $n=5, c=2, m=0, M=10$ (살균제품은 제외)
- ▶ 사카린나트륨(g/kg) : 0.08 이하
- ▶ 수크랄로스(g/kg) : 0.58 이하
- ▶ 아세설팜칼륨(g/kg) : 0.35 이하

약 주	
개요	① 쌀, 밀, 고구마 등 녹말이 포함된 재료(발아곡류 제외)와 국(입국, 누룩 등)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② 당분, 과일·채소류 추가사용 가능 ③ 주정, 증류식소주 혼합 가능
제조기준	① 녹말재료, 당분, 과일, 채소류 등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 녹말재료는 50% 이상 사용 (탁주와 동일) ▶ 과일·채소류는 20% 이하 사용 (탁주와 동일) ② 곡류에 쌀(찹쌀 포함)외에 다른 곡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 녹말재료의 중량을 기준으로 누룩을 1% 이상 사용 예 1) 쌀 70, 물엿 30, 누룩 0.5를 사용할 경우 → 누룩사용량 미달 ③ 주정·증류식소주를 혼합하는 경우 ▶ 해당 주류의 알코올분 총량의 20%이하 사용 ▶ 해당 주류의 알코올분은 25도 미만일 것 예 2) 15%술덧 80, 30%주정 20을 사용할 경우 → 주정사용량 초과 ④ 식품·첨가물 공전상 미탁(微濁) 이하로 맑게 여과 ▶ 미탁의 기준 : 유럽양조협회 혼탁도 단위 18EBC 이하 ⑤ 알코올분 규격 : 표시도수의 ± 0.5 도 이하 (생약주, 경감세율적용기준을 충족한 전통주, 소규모주류제조자의 경우 +0.5도 추가허용)
첨가재료	▶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효소처리스테비아, 젖산, 주석산, 구연산, 아미노산류, 수크랄로스, 토마틴, 아세설팜칼륨, 에리스리톨, 자일리톨, 당분, 식물

식품위생법에 따른 규격

- ▶ 메탄올(mg/mL) : 0.5 이하
- ▶ 보존료(g/kg) : 소브산으로 0.2 이하의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 ▶ 대장균군 : $n=5, c=2, m=0, M=10$ (살균제품에 한함)
- ▶ 대장균 : $n=5, c=2, m=0, M=10$ (살균제품은 제외)
- ▶ 수크랄로스(g/kg) : 0.58 이하
- ▶ 아세설팜칼륨(g/kg) : 0.35 이하

청 주	
개요	① 쌀(잡쌀)과 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② 주정의 혼합이 가능
제조기준	① 쌀의 중량 기준으로 누룩을 1%미만 사용 ② 주정을 혼합하는 경우 ▶ 쌀 1kg 당 알코올분 30도로 희석한 주정을 2.4L 이하 사용 ▶ 해당 주류의 알코올분은 25도 미만일 것 ③ 알코올분 규격 : 표시도수의 ± 0.5 도 이하 (경감세율적용기준을 충족한 전통주, 소규모주류제조자의 경우 +0.5도 추가허용)
첨가재료	①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호소처리스테비아, 젯산, 주석산, 구연산, 아미노산류, 수크랄로스, 토마틴, 아세설팜칼륨, 에리스리톨, 자일리톨, 식물(알코올분 1도 이상으로 발효시킬 수 있는 것 제외) ② 주정이 첨가된 경우에만 당분, 산분, 조미료, 향료, 색소
식품위생법에 따른 규격	
▶ 메탄올(mg/mL) : 0.5 이하 ▶ 수크랄로스(g/kg) : 0.58 이하 ▶ 아세설팜칼륨(g/kg) : 0.35 이하	

맥 주	
개요	① 발아된 맥류, 홉,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하거나 여과하여 제성한 것 ② 녹말이 포함된 재료, 당분, 캐러멜 등 추가 가능 ③ 과실(과실즙과 건조시킨 과실 포함) 첨가 가능, 주정 혼합 가능 ④ 나무통에 저장 가능
제조기준	① 발아된 맥류 사용량은 발아된 맥류, 녹말이 포함된 재료, 당분 또는 캐러멜 등의 합계 중량 기준 10% 이상 사용 ② 과실(과실즙과 건조시킨 과실 포함)은 발아된 맥류와 녹말이 포함된 재료의 합계 중량 기준 20% 이하 사용하거나 발아된 맥류의 중량 기준으로 50%이하 사용 ③ 주정을 혼합할 경우 해당주류의 알코올분은 25도 미만 ④ 알코올분 규격 : 표시도수의 ± 0.5 도 이하 (소규모주류제조자의 경우 +0.5도 추가허용)
첨가재료	① 당분, 산분, 조미료, 향료, 색소, 식물 ②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솔비톨,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에리스리톨, 자일리톨, 호소처리스테비아, 우유, 분유, 유크림, 아스코르빈산, 빵(밀가루 또는 기타 곡분, 설탕, 유지, 달걀, 효모, 우유를 주원료로 하여 이를 발효한 반죽을 익힌 것을 말한다), 다량어포, 꿀,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식품첨가물 중 유화제, 증점제, 안정제 등 성상의 변화 없이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시키는 것
식품위생법에 따른 규격	

- ▶ 메탄올(mg/mL) : 0.5 이하
- ▶ 수크랄로스(g/kg) : 0.58 이하
- ▶ 아세설팜칼륨(g/kg) : 0.35 이하

과 실 주

개요	① 과실(과실즙과 건조시킨 과실 포함) 또는 과실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하거나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② 당분, 과실 등의 첨가 가능 ③ 주정, 브랜디, 일반증류주의 혼합이 가능
제조기준	① 첨가하는 당분은 주원료의 당분과 첨가하는 당분의 합계 중량 기준으로 80% 이하 사용 ② 주정, 브랜디, 일반증류주를 혼합할 경우 ▶ 해당 주류의 알코올분 총량의 80% 이하 사용 ▶ 해당 주류의 알코올분은 25도 미만일 것 ③ 알코올분 규격 : 표시도수의 ± 0.5도 이하 (경감세율적용기준을 충족한 전통주, 소규모주류제조자의 경우 +0.5도 추가허용)
첨가재료	① 당분, 산분, 조미료, 향료, 색소, 사카린나트륨, 아스코르빈산, 식물 ②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솔비톨,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에리스리톨, 자일리톨, 효소처리스테비아, 아라비아검, 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식품위생법에 따른 규격

- ▶ 메탄올(mg/mL) : 1.0 이하
- ▶ 보존료(g/kg) : 소브산으로 0.2 이하의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 ▶ 납(mg/kg) : 0.2 이하(포도주에 한함)
- ▶ 사카린나트륨(g/kg) : 0.08 이하
- ▶ 수크랄로스(g/kg) : 0.58 이하
- ▶ 아세설팜칼륨(g/kg) : 0.35 이하
- ▶ 메타중아황산칼륨 등 이산화황화합물(g/kg) : 0.35 미만(이산화황으로)

소 주	
개요	<증류식 소주> ① 녹말이 포함된 재료, 국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연속식증류 이외의 방법으로 증류한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발아시킨 곡류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 것 ▶ 곡류에 물을 뿌려 밀봉·발효시켜 증류한 것 ▶ 자작나무숯(다른 재료를 혼합한 숯 포함)으로 여과한 것 ② 주정, 곡물주정의 혼합이 가능 ③ 나무통에 저장 가능
	<희석식 소주> ① 주정 또는 곡물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 ② 증류식소주의 혼합이 가능 ③ 나무통에 저장 가능
제조기준	① 불휘발분 2도 미만 ② 소주의 혼합 ▶ 증류식 소주 주정, 곡물주정을 혼합하는 경우 해당주류의 알코올분 총량의 50% 미만 사용 ▶ 희석식 소주 증류식소주를 혼합하는 경우 해당주류의 알코올분 총량의 50% 미만 사용 ③ 알코올분 규격 : 표시도수의 ± 0.5도 이하
첨가재료	▶ 당분(제성과정에서만 사용 가능), 구연산, 아미노산류, 소르비톨, 무기염류, 스테비올배당체, 효소처리스테비아, 사카린나트륨,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토마틴, 아세설팜칼륨, 에리스리톨, 자일리톨, 다(茶)류(단일침출차 중에서 가공곡류차를 제외한 것), 알룰로오스, 오크칩

식품위생법에 따른 규격

- ▶ 메탄올(mg/mL) : 0.5 이하
- ▶ 알데히드(mg/100mL) : 70.0 이하
- ▶ 사카린나트륨(g/kg) : 0.08 이하
- ▶ 수크랄로스(g/kg) : 0.58 이하
- ▶ 아세설팜칼륨(g/kg) : 0.35 이하

위스키

개요	① 발아된 곡류와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해서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② 일반 곡류 추가 가능 ③ 주정의 혼합이 가능
제조기준	① 불휘발분 2도 미만 ② 나무통에 넣어 저장하는 기간은 1년 이상 ③ 주정을 혼합할 경우 해당 주류의 알코올분 총량의 80% 이하 사용 ④ 알코올분 규격 : 표시도수의 ± 0.5 도 이하
첨가재료	▶ 당분, 산분, 조미료, 향료, 색소
식품위생법에 따른 규격	
▶ 메탄올(mg/mL) : 0.5 이하 ▶ 알데히드(mg/100mL) : 70.0 이하	

브랜디

개요	① 과실주(지게미 포함)를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② 주정의 혼합이 가능
제조기준	① 불휘발분 2도 미만 ② 나무통에 넣어 저장하는 기간은 1년 이상 ③ 주정을 혼합할 경우 해당 주류의 알코올분 총량의 80% 이하 사용 ④ 알코올분 규격 : 표시도수의 ± 0.5 도 이하
첨가재료	▶ 당분, 산분, 조미료, 향료, 색소
식품위생법에 따른 규격	
▶ 메탄올(mg/mL) : 1.0 이하 ▶ 알데히드(mg/100mL) : 70.0 이하 ▶ 메타중아황산칼륨 등 이산화황화합물(g/kg) : 0.03 미만(이산화황으로)	

일반증류주

개요	① 소주류, 위스키, 브랜디 등을 제외한 증류주 ▶ 고량주, 럼(당밀), 진(노간주열매), 보드카(자작나무숫 여과), 데킬라(용설란) 등 ② 주정, 곡물주정, 소주류, 일반증류주의 혼합이 가능 ③ 위스키, 브랜디의 혼합이 가능 ④ 과실, 채소류 첨가 가능 ⑤ 나무통에 저장 가능
제조기준	① 불휘발분 2도 미만 ② 첨가재료로 사용되는 과실, 채소류는 발효 금지 ③ 알코올분 규격 : 표시도수의 ± 0.5 도 이하
첨가재료	① 당분, 산분, 조미료, 향료, 색소, 식물 ②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솔비톨,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에리스리톨, 자일리톨, 호소처리스테비아

식품위생법에 따른 규격

- ▶ 메탄올(mg/mL) : 1.0 이하(단, 곡물을 주원료로 한 제품은 0.5 이하)
- ▶ 알데히드(mg/100mL) : 70.0 이하 ▶ 수크랄로스(g/kg) : 0.58 이하
- ▶ 아세설팜칼륨(g/kg) : 0.35 이하
- ▶ 메타중아황산칼륨 등 이산화황화합물(g/kg) : 0.03 미만(이산화황으로)

리큐르

개요	① 소주류, 위스키, 브랜디 등을 제외한 증류주 ② 주정, 곡물주정, 소주류, 일반증류주의 혼합이 가능 ③ 위스키, 브랜디의 혼합이 가능 ④ 과실, 채소류 첨가 가능 ⑤ 나무통에 저장 가능
제조기준	① 불휘발분 2도 이상 ② 첨가재료로 사용되는 과실, 채소류는 발효 금지 ③ 알코올분 규격 : 표시도수의 ± 0.5 도 이하
첨가재료	① 당분, 산분, 조미료, 향료, 색소, 식물 ②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솔비톨,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에리스리톨, 자일리톨, 호소처리스테비아, 우유, 분유, 유크림,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식품첨가물 중 유화제, 증점제, 안정제 등 성상의 변화없이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시키는 것

식품위생법에 따른 규격

- ▶ 메탄올(mg/mL) : 1.0 이하 ▶ 수크랄로스(g/kg) : 0.58 이하 ▶ 아세설팜칼륨(g/kg) : 0.35 이하

기타주류

개요	① 용해하여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상태의 것 ②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맥주 이외의 발효주 ③ 쌀 및 입국에 주정을 첨가하여 여과한 것 ▶ 첨가재료 : 당분, 산분, 조미료, 캐러멜색소 ④ 발효주에 주정 또는 증류주류를 섞은 것으로서,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외의 것 ⑤ 그 밖의 주류
제조기준	알코올분 규격 : 표시도수의 ± 0.5 도 이하 (발효주 중 경감세율적용기준을 충족한 전통주의 경우 +0.5도 추가허용)
첨가재료	「식품위생법」상 사용이 불가능한 원료 또는 첨가재료 사용 금지 ▶ 사카린나트륨, 소브산 등

식품위생법에 따른 규격

- ▶ 메탄올(mg/mL) : 1.0 이하
- ▶ 메타중아황산칼륨 등 이산화황화합물(g/kg) : 0.03 미만(이산화황으로)
단, 과실주를 사용하여 제조한 경우 0.2 미만

주 정

개요	① 녹말 또는 당분이 포함된 재료를 발효시켜 알코올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② 알코올분이 포함된 재료를 알코올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제조기준	① 주정의 알코올분 도수는 95도 이상 ② 곡물주정(곡류를 원료로 한 주정)은 알코올분 도수는 85도 이상 90도 이하 ③ 알코올분 규격 : 표시도수의 ± 0.5 도 이하
첨가재료	▶ 지정되어 있지 않음

주정의 품질기준

- ▶ 성상 : 무색투명하고 부유물 및 이취, 이미가 없을 것
- ▶ 증발잔류물(mg/100mL) : 2.5이하
- ▶ 총산(w/v%) : 0.002이하(초산으로)
- ▶ 메탄올(mg/mL) : 0.15 이하
- ▶ 아세트알데히드(mg/100mL) : 1 이하
- ▶ 퓨젤유(v/v%) : 0.01 이하
- ▶ 황산정색물 : 불검출
- ▶ 염화물 : 불검출
- ▶ 과망간산환원성물질 : 5분 이내에 표준액보다 퇴색하지 않을 것



[첨가재료의 종류]

- ▶ 당분 : 설탕, 포도당, 과당,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유당 또는 꿀
- ▶ 산분 :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식품첨가물로서 그 주된 용도가 산도조절제로 사용되는 것
- ▶ 조미료 : 아미노산류, 글리세린, 덱스트린, 홉, 무기염류, 탄닌산, 오크칩
- ▶ 향료 :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식품첨가물로서 그 주된 용도가 향료로 사용되는 것
- ▶ 색소 :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식품첨가물로서 그 주된 용도가 착색료로 사용되는 것
- 식용색소 종류에 따라 0.1 ~ 0.3g/kg 이하
- ▶ 주류에 공통적으로 사용 가능한 첨가재료
 - 이산화탄소, 질소, 산소
 -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식품첨가물로서 그 주된 용도가 보존료로 사용되는 것
 -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식품첨가물로서 그 주된 용도가 효모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성분으로 사용되는 것
- ▶ 「식품위생법」상 허용되는 식물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전문정보 → 식품원료 → 식품원료목록 확인

※ 오크칩, 아미노산류, 무기염류, 당시럽류 등 첨가재료에 관한 설명은 주세법 기본통칙 참고



주류의 정의 및 종류

Q '비알코올' 음료와 '무알코올' 음료는 주류에 해당되는지?

A 무알코올은 알코올이 전혀 없음을 뜻하며, 비알코올은 제품에 1% 미만의 알코올이 포함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두 음료 모두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되지 않음

Q 희석식 소주는 공업용 알코올로 만드는지?

A 알코올은 식품용과 공업용으로 사용 용도가 나뉘는데, 희석식 소주는 곡물을 원료로 발효시켜 증류, 정제한 식품용 알코올을 사용하여 제조하고 있음

Q 위스키가 함유된 초콜릿을 제조할 경우 주류 해당여부 및 판매가능 여부는?

A 초콜릿의 경우 음용이 불가능한 과자류의 일종으로 음료로 볼 수 없으므로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식품위생법」상 초콜릿류의 경우 제품화하기 위해서는 풍미증진의 목적으로 알코올 성분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제품에는 1%미만으로 잔류하여야 함

Q 소주에 식물(인삼, 과일 등)을 넣어 침출한 경우 주류의 종류는?

A 소주 또는 주정에 인삼 등과 같이 불휘발 성분(당분 등)의 침출이 많지 않은 경우 일반증류주로 분류되나 과일을 침출하거나 꿀, 설탕 등을 첨가하여 불휘발 성분이 2% 이상일 경우 리큐르로 분류됨

Q 구렁이, 말벌 등과 같은 동물을 주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A 보호동물, 독성 등의 이유로 「식품위생법」상 사용이 금지된 경우 주류원료로 사용할 수 없음

Q 술지게미를 판매할 경우 주류에 해당되는지?

A 탁주 등의 주류(주정제외) 제조 시 생성되는 술지게미는 음료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 주류에 해당되지 아니함

Q 주류에 금분(Gold Leaf)을 첨가할 수 있는지?

A 금분은 2001년 「식품첨가물공전」상 색소로 분류 되었으며 이에 따라 「주세법」에서는 청주, 맥주, 과실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에 사용이 가능함

Q 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등 증류주의 제한사항 중 ‘불휘발분’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A 「주세법」제2조 정의에 따르면 ‘불휘발분’이란 전체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휘발되지 아니하는 성분을 말하는 것으로 주류 100mL를 물증탕기에서 가열, 증발시켜 건조하였을 때 휘발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성분을 말함

Q 알코올을 포함한 조미용소스, 건강기능식품 등은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A 조미용소스, 건강기능식품 등은 분석·감정 등을 참고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함. 다만 희석하여도 맛 등으로 인해 통상의 음료로 음용할 수 없는 것은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Q 소주, 브랜디, 고량주 또는 럼 등을 섞어서 제조할 경우 주류의 종류는?

A 증류주류 간의 단순혼합으로 소주, 위스키, 브랜디의 규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반증류주에 해당됨. (단, 첨가재료의 범위가 다른 리큐르와의 혼합은 예외가 될 수 있음)



CHAPTER

주류 제조면허 신청





1. 면허유형

근거법령 주세법 제2조, 주류면허법 시행령[별표1]

- 주류제조장에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주류 종류별로 제조면허를 받아야 함

주류 제조면허의 유형		
일반주류		아래의 전통주 및 소규모주류 이외의 주류
전통주	민속주	- 주류부문의 국가 및 시·도 무형유산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지역특산주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 도지사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
소규모주류		- 제한된 용량의 제조용기 갖춘 후 제조할 수 있는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위스키, 브랜디 다만, 아래의 경우로 한정한다. ▶ 과실주에서 과실즙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 증류식 소주는 해당 제조자가 직접 발효 과정을 거쳐 제조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다른 주류를 이용하여 제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 위스키 및 브랜디는 해당 제조자가 직접 발효(브랜디의 경우 과실즙을 이용한 발효는 제외한다) 과정을 거쳐 제조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다른 주류를 이용하여 제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취득 절차



전통주 제조면허 추천서 취득
(전통주제조자에 한함)

지자체로부터 추천서 *취득(추천서 유효기간 : 6개월)
* 주류의 종류 및 추천원료를 정확히 기재



주류 제조면허 신청

관할 세무서에 주류 제조면허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서 처리기간 : 40일)



시설조건부 면허 취득
(필요시)

1년 이내 착수, 3년 이내 완공조건의 시설조건부 면허
(소규모 주류는 6개월 이내 착수, 1년 이내 완공조건)



공사 착수 및 완공 신고

- 제조시설 공사 착수 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
- 제조시설 완공 후 관할 세무서에 제조설비신고서와 용기검정 신청서 제출



시설점검 및 용기검정

관할 세무서에서 제조장을 현장 점검



제조면허 취득

관할 세무서에서 제조면허증 발급
(사업범위 및 준수조건 등의 부관 지정사항 확인)
※ 도시철도채권(45만원)
또는 국민주택채권(30만원) 구입

3. 신청 시 구비서류

근거법령 주류면허법 시행규칙[별표]

- 주류 제조면허 신청서(정부 전자수입인지 50,000원 첨부)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제조면허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제조장 소재지 국토이용계획확인원
- 제조장 대지의 상황 및 건물의 구조를 표시하는 도면
- 제조·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용기의 목록
 -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4호 용기검정신청서, 제26호 제조 및 판매설비신고서]
- 제조시설·설비 등 설명서 및 용량표
- 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 설명서(해당 주류 종류의 주류제조방법신청서 첨부)
 -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 제50호 주종별 제조방법 승인신청서]
- 제조장부지 및 건물(공장)의 자가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제조장을 임차하는 경우)
-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법인인 경우)
- 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인 경우)
- 사·도지사의 주류제조면허 추천서 사본(전통주를 제조하는 경우)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주류제조면허 추천서]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영업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 소규모주류 제조자가 제조장이나 영업장 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 축제 또는 경연대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

④ 면허의 제한

근거법령 주류면허법 제7조

- ▶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특수관계인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포함)
-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 ▶ 국세 또는 지방세를 100만원 이상 포탈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대리인, 임원, 지배인 포함)
- ▶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대리인, 임원, 지배인 포함)
- ▶ 주류제조 관련 법령에 관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대리인, 임원, 지배인 포함)
- ▶ 금고 이상의 형으로 집행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대리인, 임원, 지배인 포함)
- ▶ 면허 신청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주류 제조면허 신청

Q 탁주면허를 일반주류와 전통주로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A 주류 제조면허는 주류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고 있으며 제조장의 유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시설 기준을 정하여 일반주류, 전통주, 소규모주류로 분류하여 세율, 유통방법 등을 달리하고 있음 따라서 동일 사업장 내에서 동일 주종(탁주)으로 서로 다른 유형의 주류면허(일반주류와 전통주)를 동시에 취득할 수 없음

Q 음식점에서 술을 만들어 무상으로 제공해도 되는지?

A 가정에서 가족이 직접 소비하는 것을 제외하고 개인이 제조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류를 공급하는 것은 영리목적의 유·무상을 막론하고 제조면허를 받아야 함

Q 주류의 제조면허 중 시험제조 면허란?

A 시험 또는 시음행사를 하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축제 또는 경연대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는 면허로 면허요건 중 주류제조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제조기간과 제조수량을 지정하여 면허할 수 있음

Q 칵테일을 제조하여 음식점에서 판매하려는 경우 주류 제조면허가 필요한지?

A 접객업의 영업장소 내에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 주류에 물료를 섞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보지 아니함

Q 주류원액을 구입하여 소분 후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주류 제조면허를 취득해야 하는지?

A 주류를 용기에 넣는 행위는 주류제조로, 그 행위 장소는 주류제조장으로 보고 있으므로, 소분 후 재포장은 주류의 종류를 확인한 후 해당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함

Q 개인명의로 지역특산주 제조면허를 받았는데 법인을 설립하여 일반면허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개인이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신청서와 동시에 법인이 동일 제조장 소재지에 동일 주종의 제조면허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충면허를 신청할 수 있음

Q 유희하고 있는 제조장을 임대하여 주류제조면허 신청을 할 수 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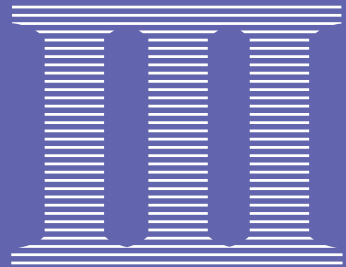
A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주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종류별로 제조장마다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하므로 이미 면허받은 장소의 제조장은 임대할 수 없음

Q 일반음식점에 소규모주류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A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가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주류를 제조하는 작업장과 판매장소를 명확하게 분리하였다면 소규모주류면허를 신청할 수 있음

Q 시설조건부 주류제조면허를 받고 위탁제조가 가능한지?

A 위탁제조를 하려는 경우 주류제조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시설조건부 주류제조면허의 경우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위탁제조는 불가함



CHAPTER

주류제조장 시설기준





1. 제조장 공통사항

근거법령 주류면허법 제8조, 영 제10조, 영 제21조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 위생시설과 구분

- 화장실, 합숙소, 식당, 폐기물 처리장, 교육장, 판매장소 등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과 분리
- 소규모주류제조자는 주류를 제조하는 작업장과 판매장소를 명확하게 분리
- 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으로 구분(사무공간의 경우 파티션 가능)

● 제조용기의 구분

- 주류의 제조용기는 주류 종류별로 구분하여 사용
- ※ 단, 세척전문시설(CIP 또는 이상의 성능)을 갖춘 경우 공동이용이 가능

● 주류 외 식품제조

- 주류 제조시설을 식품제조를 위해 사용하려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조방법 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제조시설 구비

- 증류시설, 입국실(또는 입국기), 살균시설, 당화·자비시설 등

● 제조장 이전 사유가 있는 경우

- 이전 예정일 15일 전까지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제조장 내 제조시설의 신설·확장·개량 등 변동이 생긴 경우

- 주류제조용기의 폐기 또는 추가 등 변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④ 주류용기의 검정 및 표기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운반에 사용되는 용기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검정을 받아
용기검정부의 '용기의 종류 및 번호'를 표시해야 함

예시)
탁주 발효조 제1호
용량 : 100L
검정년월일 : 2023. 4. 1.



2. 주류별 시설기준

근거법령 주류면허법 시행령 [별표1]

구분	시설구분	시설기준		
		일반면허	소규모주류	지역특산주
탁주	1) 담금·저장·제성용기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나) 제성조 총용량	3kL 이상 2kL 이상	1kL 이상 5kL 미만 (담금(발효), 제성조)	담금실 10㎡ 이상
	2) 시험시설 가) 간이증류기 나) 주정계	1대 1조 (0.2도 눈금, 0~30도)	1대 1조 (0.2도 눈금, 0~30도)	1대 1조 (0.2도 눈금, 0~30도)
※ 살균탁주 제조장의 경우 제반시설 구비(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 살균기(또는 살균조), 살균시험기구(무균상자, 향온기), 살균실험실				
약주	1) 담금·저장·제성용기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나) 제성조 총용량	3kL 이상 2kL 이상	1kL 이상 5kL 미만 (담금(발효), 제성조)	담금실 10㎡ 이상
	2) 시험시설 가) 간이증류기 나) 주정계	1대 1조 (0.2도 눈금, 0~30도)	1대 1조 (0.2도 눈금, 0~30도)	1대 1조 (0.2도 눈금, 0~30도)
※ 살균약주 제조장의 경우 제반시설 구비(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 살균기(또는 살균조), 살균시험기구(무균상자, 향온기), 살균실험실				
청주	1) 담금·저장·제성용기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나) 저장·검정조 총용량	5kL 이상 7.2kL 이상	1kL 이상 5kL 미만 (담금(발효)조, 저장, 검정, 제성조 총용량)	담금실 10㎡ 이상
	2) 시험시설 가) 현미경 나) 향온향습기 다) 간이증류기 라) 무균상자 마) 주정계	1대(500배 이상) 1대(0~65℃) 1대 1대 -	- - 1대 - 1조 (0.2도 눈금, 0~30도)	- - 1대 - 1조 (0.2도 눈금, 0~30도)

구분	시설구분	시설기준		
		일반면허	소규모주류	지역특산주
맥주	1) 담금·저장·제성용기 가) 용기 총용량 (1) 전발효조	25kL 이상	0.5kL 이상 (당화·여과·자비조 등)	(해당없음)
	(2) 후발효조(저장조)	50kL 이상	5kL 이상 120kL 미만 (담금, 저장조)	
	2) 시험시설			
	가) 현미경	1대(500배 이상)	-	
	나) 항온항습기	1대(0~65℃)	-	
	다) 가스압측정기	1대	-	
	라) 간이증류기	1대	1대	
과실주	마) 주정계	-	1조 (0.2도 눈금, 0~30도)	
	1) 담금·저장·제성용기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21kL 이상	1kL 이상 5kL 미만 (담금(발효), 제성조)	원료처리실 6㎡ 이상
	나) 저장·검정조 총용량	22.5kL 이상		담금실 20㎡ 이상 (밀술, 제성, 저장실)
	2) 시험시설			
	가) 현미경	1대(500배 이상)	-	-
	나) 항온항습기	1대(0~65℃)	-	-
	다) 간이증류기	1대	1대	1대
	라) 온도계	-	-	1개(0.2℃ 눈금)
	마) 주정계	-	1조 (0.2도 눈금, 0~30도)	1조 (0.2도 눈금, 0~100도)
	3) 부대시설	-	-	여과시설, 세병시설, 병입시설, 타전시설
	※ 소규모 과실주 경우 과실(과실즙은 제외)을 이용하여 제조하여야 함			
소주 (희석식)	1) 담금·저장·제성용기 가) 희석·검정조 총용량	25kL 이상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시험시설			
	가) 현미경	1대(500배 이상)		
	나) 항온항습기	1대(0~65℃)		
	다) 간이증류기	1대		

구분	시설구분	시설기준			
		일반면허	소규모주류	지역특산주	
소주 (증류식)	1) 담금·저장·제성용기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나) 저장·검정조 총용량	5kL 이상 25kL 이상	1kL 이상 5kL 미만 5kL 이상 25kL 미만 (저장, 검정조)	담금실 25㎡ 이상 (원료처리실, 침출, 발효, 저장, 제성실)	
	2) 시험시설 가) 현미경 나) 항온항습기 다) 간이증류기 라) 온도계 마) 주정계	1대(500배 이상) 1대(0~65℃) 1대 - -	- - 1대 - 1조 (0.2도 눈금, 0~100도)	- - 1대 1개(0.2℃ 눈금) 1조 (0.2도 눈금, 0~100도)	
	3) 부대시설	-	-	여과시설, 세병시설, 병입시설, 타전시설	
	※ 소규모 소주 경우 직접 발효 과정을 거쳐 제조하여야 함				
	1) 담금·저장·제성용기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나) 원액숙성용 나무통 총용량 다) 저장·제성조 총용량	5kL 이상 나)와 다)를 합해서 25kL 이상	1kL 이상 5kL 미만 나)와 다)를 합해서 5kL 이상 25kL 미만	(해당없음)	
	2) 시험시설 가) 현미경 나) 항온항습기 다) 간이증류기 라) 주정계	1대(500배 이상) 1대(0~65℃) 1대 -	- - 1대 1조 (0.2도 눈금, 0~100도)		
	※ 소규모 위스키 경우 직접 발효 과정을 거쳐 제조하여야 함				
	1) 담금·저장·제성용기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나) 원액숙성용 나무통 총용량 다) 저장·제성조 총용량	5kL 이상 나)와 다)를 합해서 25kL 이상	1kL 이상 5kL 미만 나)와 다)를 합해서 5kL 이상 25kL 미만		
브랜디	2) 시험시설 가) 현미경 나) 항온항습기 다) 간이증류기 라) 주정계	1대(500배 이상) 1대(0~65℃) 1대 -	- - 1대 1조 (0.2도 눈금, 0~100도)	(해당없음)	
	※ 소규모 브랜디 경우 직접 발효(과실즙을 이용한 발효는 제외)과정을 거쳐 제조하여야 함				
	1) 담금·저장·제성용기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나) 원액숙성용 나무통 총용량 다) 저장·제성조 총용량	5kL 이상 나)와 다)를 합해서 25kL 이상	1kL 이상 5kL 미만 나)와 다)를 합해서 5kL 이상 25kL 미만		
	2) 시험시설 가) 현미경 나) 항온항습기 다) 간이증류기 라) 주정계	1대(500배 이상) 1대(0~65℃) 1대 -	- - 1대 1조 (0.2도 눈금, 0~100도)		
	※ 소규모 브랜디 경우 직접 발효(과실즙을 이용한 발효는 제외)과정을 거쳐 제조하여야 함				
	1) 담금·저장·제성용기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나) 원액숙성용 나무통 총용량 다) 저장·제성조 총용량	5kL 이상 나)와 다)를 합해서 25kL 이상	1kL 이상 5kL 미만 나)와 다)를 합해서 5kL 이상 25kL 미만		

구분	시설구분	시설기준		
		일반면허	소규모주류	지역특산주
일반 증류주	1) 담금·저장·제성용기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나) 저장·침출·제성조 총용량	5kL 이상 25kL 이상	(해당없음)	담금실 25㎡ 이상 (원료처리실, 침출, 발효, 저장, 제성실)
	2) 시험시설 가) 현미경 나) 항온항습기 다) 간이증류기 라) 온도계 마) 주정계	1대(500배 이상) 1대(0~65℃) 1대 - -		- - 1대 1개(0.2℃ 눈금) 1조 (0.2도 눈금, 0~100도)
	3) 부대시설	-		여과시설, 세병시설, 병입시설, 타전시설
리큐르	1) 담금·저장·제성용기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나) 저장·침출·제성조 총용량	5kL 이상 25kL 이상	(해당없음)	담금실 25㎡ 이상 (원료처리실, 침출, 발효, 저장, 제성실)
	2) 시험시설 가) 현미경 나) 항온항습기 다) 간이증류기 라) 온도계 마) 주정계	1대(500배 이상) 1대(0~65℃) 1대 - -		- - 1대 1개(0.2℃ 눈금) 1조 (0.2도 눈금, 0~100도)
	3) 부대시설	-		여과시설, 세병시설, 병입시설, 타전시설
기타 주류	1) 담금·저장·제성용기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나) 저장·침출·제성조 총용량	5kL 이상 25kL 이상	(해당없음)	담금실 25㎡ 이상 (원료처리실, 침출, 발효, 저장, 제성실)
	2) 시험시설 가) 현미경 나) 항온항습기 다) 간이증류기 라) 온도계 마) 주정계	1대(500배 이상) 1대(0~65℃) 1대 - -		- - 1대 1개(0.2℃ 눈금) 1조 (0.2도 눈금, 0~100도)
	3) 부대시설	-		여과시설, 세병시설, 병입시설, 타전시설

구분	시설구분	시설기준
주정 (일반면허)	1) 발효 및 증류시설	
	가) 발효조 총용량	275kL 이상
	나) 술덧탑	1기 이상
	다) 정제탑	1기 이상
	2) 시험시설	
	가) 현미경	1대(1,000배 이상)
	나) 항온항습기	1대
	다) 간이증류기	1대
	※ 유량계기 설치(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 주정 제조장에는 지정한 장소에 유량계기를 설치함(1개 이상의 예비유량계기 보유)	

구분	시설구분	시설기준
민속주 (주종별)	1) 건물	
	가) 담금실 (밑술, 제성, 저장실 포함)	10㎡ 이상
	2) 시험시설	
	가) 온도계	1개(0.2℃ 눈금)
	나) 간이증류기	1대
	다) 주정계	1조
		(0.2도 눈금, 0~100도)
	3) 부대시설	세척 또는 세병장시설 병입 또는 타전시설

Ⓢ 일반면허 용기시설 기준

주정을 제외한 일반면허의 경우 주류제조용기는 제조방법 상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음

3. 시설기준 충족을 위한 주의사항

근거법령 주류면허법 시행령[별표1]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

● 주류 제조용기

- 합성수지(PE)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의 시험(20~50%에탄올 용출시험 등) 분석에서 사용 적격 판정을 받은 것을 사용

③ 합성수지(PE) 시험성적서

KCL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orea Conformity Laboratories

발행번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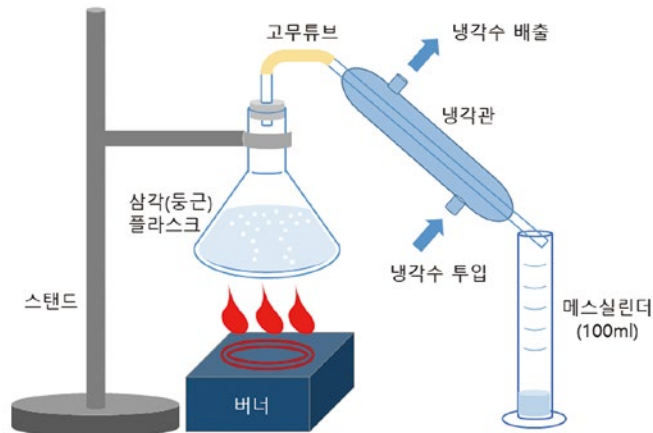
시험·검사항목	단위	시험·검사기준	시험·검사결과	판정	비고
잔류 납	mg/kg	100 이하(합)	불검출	적합	-
잔류 카드뮴	mg/kg	100 이하(합)	불검출	적합	-
잔류 수은	mg/kg	100 이하(합)	불검출	적합	-
잔류 6가크롬	mg/kg	100 이하(합)	불검출	적합	-
용출 납	mg/L	1 이하	불검출	적합	-
용출 과망간산칼륨소비량	mg/L	10 이하	1	적합	-
용출 총용출량 4% 초산	mg/L	30 이하	4	적합	-
용출 총용출량 물	mg/L	30 이하	1	적합	-
용출 총용출량 n-헵탄	mg/L	150 이하	6	적합	-
용출 총용출량 50% 에탄올	mg/L	30 이하	8	적합	-
용출 1-헵센 4% 초산	mg/L	3 이하	불검출	적합	-
용출 1-헵센 물	mg/L	3 이하	불검출	적합	-
용출 1-헵센 n-헵탄	mg/L	3 이하	불검출	적합	-
용출 1-헵센 50% 에탄올	mg/L	3 이하	불검출	적합	-
용출 1-옥텐 4% 초산	mg/L	15 이하	불검출	적합	-
용출 1-옥텐 물	mg/L	15 이하	불검출	적합	-
용출 1-옥텐 n-헵탄	mg/L	15 이하	불검출	적합	-
용출 1-옥텐 50% 에탄올	mg/L	15 이하	불검출	적합	-
종합판정	적합				
시험·검사방법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				

- 이 하 여 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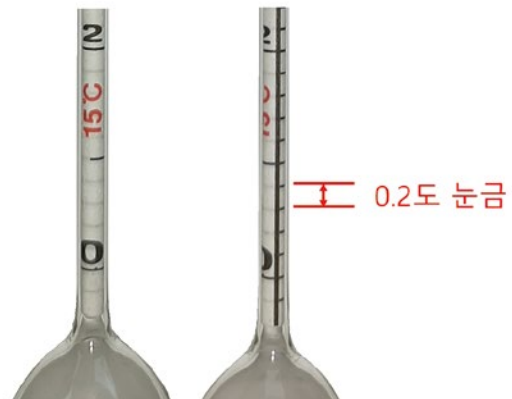
알코올 함량이 20%이하 주류는 20%에탄올에, 20%초과 주류는 50%에탄올 용출시험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시험시설

구 분	설 명
간이증류기	알코올분을 측정하기 위해 시료를 증류하는 간이 실험장치
주정계	주류의 알코올 함량을 측정하는 부침식 측정기구(규격 : 0.2도 눈금)
온도계	주류의 온도를 측정하는 접촉식 측정기구(규격 : 0.2℃ 눈금)
항온항습기	온도 및 습도의 제어가 가능한 미생물 배양장치(0~65℃)



<간이증류기>



<주정계(0~100도, 0.2도 눈금)>

※ 하나의 주정계로 0~50도 또는 50~100도를 측정할 수 있는 광범위 주정계는 부적합함

● 부대시설

구 분	설 명
여과시설	필터 등을 통해 주류 속의 고형물을 분리하는 시설
세병시설	판매용기(페트병, 유리병, 캔 등)를 세척하는 시설
병입시설	주류를 판매용기(페트병, 유리병, 캔 등)에 주입하는 시설
타전시설	판매용기(페트병, 유리병, 캔 등)를 마개로 밀봉하는 시설

자연침전여과, 깔대기병입, 1회용 브릿지 마개의 경우 부대시설로 볼 수 없음



<여과기>



<세병기>



<병입기>



<타전기>



<세병·병입·타전기>

※ 상기 시험·부대시설 사진은 설명을 돕기 위한 예시로 동일기기를 구비해야 하는 것은 아님



주류제조장 시설기준

Q 조주정을 구입하여 정제주정을 제조하는 경우에도 제조장시설기준인 발효시설(발효조, 술덧탑)을 갖추어야 하는지?

A 주정 제조장의 시설은 합성주정만을 제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방법에 관계없이 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Q 지역특산주로 과실주, 일반증류주 제조면허를 취득하려 할 경우, 원료처리실의 면적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A 시설기준에 따라 과실주는 원료처리실 6㎡ 이상, 담금실(밑술, 제성, 저장실 포함) 20㎡이며, 일반 증류주는 담금실(원료처리, 침출, 발효, 저장, 제성실 포함) 25㎡ 이상으로 주류별로 각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Q 해외에서 위스키 원액을 구입하여 병입 후 판매하는 경우도 위스키 제조시설 기준에 따른 모든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지?

A 주류를 병입하는 행위는 주류제조에 해당되므로 위스키의 일반적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함 다만, 제조방법상 필요하지 않은 주류용기의 경우 구비 요건에서 제외됨

Q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병입 또는 숙성시켜 판매할 수 있는지?

A 제조면허를 받은 자라 하더라도 면허받은 제조장을 벗어나 제조행위를 하였을 경우 무면허 제조 행위로 볼 수 있음

Q 한 개의 제조장에서 여러 종류의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제조 용기를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A 세척전문시설(CIP 또는 이상의 성능)을 갖춘 경우 세무서장의 승인 후 공통이용이 가능함
다만, 각 주종별 면허의 시설기준은 갖추어야 함

Q 제조방법이 동일한 술덧을 한 용기에 제조한 경우 탁주제품과 소주용 술덧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A 술덧은 주류의 종류별로 제조하여야 하므로 탁주용 술덧은 탁주 용기, 소주용 술덧은 소주 용기에서 제조하여야 함

Q 시험시설에 0~50도 50~100도 큰범위로 측정할 수 있는 주정계가 적합한지?

A 하나의 주정계로 0~50도 또는 50~100도를 측정할 수 있는 광범위 주정계는 0.2도 눈금을 초과
하므로 시설 기준에 부적합함

Q 제조용기를 실외에 설치해도 되는지?

A 밀폐식용기를 제조장으로 신고된 공간에 설치하여 배관을 통해서만 이동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갖춘 경우 가능함

Q 제조용기로 담금주용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 가능한지?

A 합성수지(PE)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의 시험분석에서 사용 적격
판정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함

IV

CHAPTER

제조관리



IV

제조관리



1. 제조방법 신청

근거법령 주류면허법 제29조, 영 제37조

● 주류제조방법의 신청 및 승인

- 주류에 대한 제조방법 변경(신규 포함)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일 15일 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조방법 신청서를 제출하고 적합승인을 받은 후 주류를 제조하여야 함

- ▶ 주원료의 사용량 변경, 첨가재료의 추가, 발효제의 변경 등은 중요한 변경사항이므로 반드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조방법 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다만,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신고로 가능함
- 제성과정에 알코올분 도수를 변경·추가하는 경우
- 첨가재료 추가 없이 배합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 원료종류, 최종제품의 알코올도수 및 생산량 변화 없이 원료 배합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④ 주류 제조방법 전자신청 이용방법

[주류 제조방법 전자신청 이용방법]

1.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 접속 후 사업자번호로 로그인
2. 주류제조방법승인신청서 화면 선택
증명·등록·신청 ➡ 소비제세 관련 신청·신고 ➡ 주세 ➡ 주류제조방법승인 신청/신고

※ 제조방법 신청 건이 여러 건인 경우

제조방법신청서 제출이 완료된 후 다시 제조방법신청서 제출 화면으로 이동하여 기본사항을 입력한 후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자세한 사항은 주류면허지원센터 누리집(<https://i.nts.go.kr>) 참고

- 업무안내 ➡ 주류제조방법 ➡ 홈택스를 이용한 주류 제조방법 전자신청 안내
- 업무안내 ➡ 주류제조방법 ➡ 각 주류의 종류별 작성요령

2. 분석감정 의뢰

근거법령 주류면허법 제27조, 영 제34조

① 출고전 주질감정

- 주류제조방법(신규·추가·변경) 승인 이후 최초로 생산한 주류에 대해 관할세무서에 출고 전 주질감정을 신청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후 출고하여야 함

- ▶ 제조방법과 출고전 주질감정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나, 제조방법을 신청하기 전에 주질감정을 요청하거나 제조방법이 부적합 처리된 경우 주질감정도 부적합 처리됨
- ▶ 견본에 상표를 부착하되, 상표 부착이 어려운 경우 상표도안을 함께 제출(상표 신고 이전 등으로 도안이 없는 경우 주류채취조서 및 주류견본채취표에 정확한 상표명을 기재)

② 출고전 주질감정 업무처리 절차

구 분	설 명
채취신청 (주류제조자)	▶ 주류제조 후 관할세무서에 채취 신청
채취 및 발송 (세무서)	▶ 채취조서 작성, 채취표 날인·부착 ▶ 포장 등 운송준비 완료, 분석감정 의뢰 ▶ 택배 등을 통해 발송
주질감정 (주류면허지원센터)	▶ 감정결과 세무서통보
통보 (세무서)	▶ 세무서에서 주류제조장에 서면으로 결과 통보

③ 분석시료 채취 및 배송 방법

- ▶ 분석시료 채취 기준
 - 병입·포장 단위로 3~6병 채취
(500ml이상 3병, 500ml미만 200ml이상 4병, 200ml미만 6병 채취)
 - 병입되지 않은 주류는 500ml 기준 3병 채취
 - ▶ 탁주 및 약주 등 대장균 또는 대장균군 분석이 필요한 경우 견본 7본 채취
 - ▶ 포장 관련
 - 주류배송 시 파손되지 않도록 에어캡, 스티로폼 박스 등을 이용하여 포장
 - 비살균주류의 경우 냉장포장박스 또는 스티로폼 박스 등에 냉장포장
 - 배송소요시간 감안(주류면허지원센터 제주도 소재)하여 가급적 월, 화, 수(오전)에 발송
- * 수요일 오후 발송 일반택배는 배송기간이 4~5일 소요될 수 있어 비살균주류 변질 가능

② 유통주류 정기분석

- 유통 중인 주류는 매년 정기적으로 주질감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규격위반이나 허용되지 않은 원료·첨가재료 사용 또는 사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제조 또는 판매 정지 처분을 받으며, 해당 제품은 폐기될 수 있음

- ▶ 정기분석 견본은 주상표 및 보조상표가 부착되고 제조일자가 표기된 완제품이어야 함
- ▶ 정기분석 결과 적합 성적서를 받은 주류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로 인정 가능(단, 주질 감정 받은 제품(제품명, 제조연월일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생산하여 유통·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주류는 식약처에 통보함

③ 민원 성적서 발급

근거법령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시설사용규칙

③-1 수출 및 납품용, 자가참고용 분석·감정

● 의뢰 및 발급 절차

구분	내 용	
의뢰서 작성	▶ 분석·감정의뢰서 작성 - 수출용 분석·감정서는 주요 수출국 언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힌디어)로 발급 가능	
채취신청 및 채취	수출· 납품용	▶ (제조·판매 면허자)분석시료 채취 신청 ▶ (세무서)분석시료 채취, 채취조서 및 채취표 날인·부착
	자가 참고용	▶ (제조·판매 면허자)분석시료 채취, 채취조서 및 채취표 날인·부착
수수료 납부	▶ 분석·감정 수수료 납부(정부수입인지 구매)	
의뢰 및 발송	▶ 포장 및 택배 배송 - 분석시료, 분석·감정의뢰서(정부수입인지 첨부)를 주류면허지원센터로 발송	
주질감정	▶ 분석시료 도착/접수 순서별 주질 감정·분석 ▶ 감정결과를 세무서로 통보(수출 및 납품용)	
통보	▶ 세무서에서 민원인에게 감정서 교부 또는 주류면허지원센터에서 민원인에게 우편으로 감정서 교부	

※ 자가참고용 검사 성적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성적서로 사용할 수 없음

● 분석 감정 수수료 (수출·납품용 및 자가참고용)

구 분	내 용
금액	▶ 분석 항목당 1,200원 - (수출 및 납품용) 각 주류의 종류별 분석항목 전체 개수를 곱한 금액 - (자가참고용) 원하는 분석항목 개수를 곱한 금액 * 예) 수출용 소주 → 분석항목 9개 x 1,200원 = 10,800원 - 자가참고용 소주 알코올분 → 분석항목 1개 x 1,200원 = 1,200원 ▶ 사본 1부마다 : 300원 추가 * 예) 기본발급 1부 외에 사본 2부 추가시 → 300원 x 2부 = 600원
납부방법	▶ 정부 수입인지(현금 납부 불가) -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분석·감정 의뢰서 이면에 부착하거나, - 전자수입인지 누리집(www.e-revenuestamp.or.kr)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제출

㉓-2 「식품위생법」에 따른 자가품질 검사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31조

- 식품(주류) 제도가공업자는 각 주류별 자가품질검사 항목에 대해 6개월마다 1회 이상 검사하고 검사결과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함
- 주류면허지원센터는 주류제조자의 자가품질검사 의뢰 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험·검사 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음
- ※ 구비서류 : 분석·감정의뢰서, 주류견본채취표

● 검사 항목 및 수수료

주종	검사항목	항목별 수수료
주정	알데히드, 메탄올, 염화물	▶ 메탄올 23,400원
탁주, 약주	메탄올, 보존료	▶ 알데히드 23,400원
청주, 맥주	메탄올	- 메탄올, 알데히드 동시분석 28,400원
과실주	메탄올, 보존료, 납(포도주에 한함)	▶ 보존료 43,000원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메탄올, 알데히드	▶ 납(포도주) 76,700원
리큐르	메탄올	▶ 염화물 8,600원
기타주류	메탄올	※ 제조 과정 중 사용하지 않은 첨가물(보존료 등)은 검사 생략

※ 자가품질검사 의뢰 시 주종(탁주, 약주, 맥주 등)별로 각각 1종씩만 신청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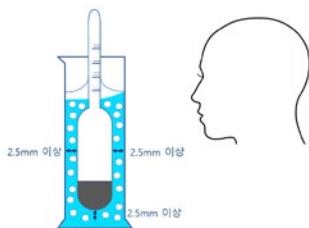
㊦ 알코올분 측정법 [주류분석규정(국세청훈령)에 준함]

- ① 15℃에서 검정한 시료를 100mL 메스실린더의 눈금까지 취하고 이것을 약 300~500mL 플라스크에 옮긴다.
- ② 메스실린더에 남은 시료를 약 15mL의 물로 2~3회 씻어 플라스크에 합친 후 증류기에 연결하여 증류한다. 이때 증류된 용액은 100mL 메스실린더에 받는다.
- ③ 탁·약주 등 저도주의 경우 증류액이 70 ~ 80mL 이상(30도 이상 고도주인 경우 95mL 이상) 받아지면 증류를 중지하고 메스실린더의 100mL 눈금까지 물로 채운다. 증류액과 물이 잘 혼합 되도록 메스실린더 입구를 막고 수차례 강하게 흔든 후 기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린다.
- ④ 기포가 제거된 메스실린더 용액에 주정계를 띄운 후 온도가 15℃일 때 알코올분을 측정한다.
- ⑤ 15℃ 이외의 온도(5~25℃)일 경우에는 주류면허지원센터 누리집 자료실에 게시된 “주류분석규정 (알코올분 온도환산표 등 별지포함)”을 이용하여 15℃ 기준의 알코올분으로 보정한다.

[주의할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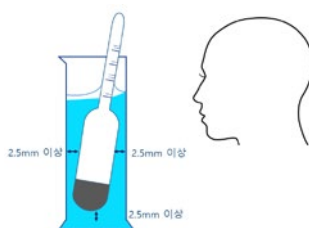
- * 부피 차이에 의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 물을 가하여 눈금까지 채우는 조작을 시료 채취 시와 동일한 온도에서 행한다.
- * 시료가 담긴 플라스크는 증류기에 단단히 고정하고, 증류기의 연결 부위 등으로 증기가 새어 나오지 않는지 확인한다.
- * 증류 후 받아진 증류액의 온도가 높은 경우에는 알코올 유출 가능성이 있으므로 냉각기의 효율을 높이거나, 가열기의 온도를 낮추도록 한다.
- * 주정계와 온도계는 한 눈금이 0.2도 이하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 주정계 표면에 기름성분 등 이물질이 묻지 않아야 하며, 파손에 주의한다.
- * 측정 과정 중 외부의 온도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공간에서 측정한다.

<주정계 사용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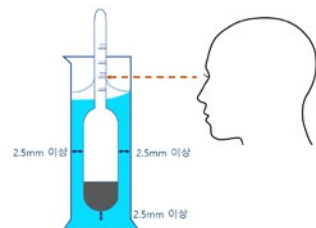
(×)

기포가 형성될 때에는 기포를 완전히 제거 후 사용할 것



(×)

주정계가 비스듬히 놓이지 않도록 수직으로 세워서 사용할 것



(○)

액면과 만나는 곳의 주정계 수치를 수평한 위치에서 읽을 것

3. 주류의 위탁제조

근거법령 주류면허법 제3조, 영 제6조

● 주류 위탁제조 요건

- 위·수탁자 모두 위탁 제조 주류의 제조면허가 있을 것
- 위탁받은 주류의 제조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지 않을 것

● 주류 위탁제조에 관한 신고의무

신고의무자 주류 제조 위탁자

신고 사유 주류의 위탁제조가 개시되거나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 주류 제조 위탁자(합병·분할로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 주류 제조 수탁자, 주류의 종류·규격, 제조장, 계약된 제조기간·수량 및 원료용 주류 구입자의 변경

신고 기한 위탁제조 개시일 또는 중요사항의 변경 적용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25일

신고 내용 주류 제조 위·수탁자의 인적사항, 위탁제조 주류의 종류·규격·제조방법, 제조장의 위치, 제조기간·수량 등

첨부 서류 주류제조위탁신고서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소규모주류제조자에 대한 과세표준 특례 제외

주류의 수량(탁주, 맥주) 및 주류의 가격(약주, 청주)에 대하여 위탁제조한 주류는 과세표준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4. 주류제조장 내 시음주의 제조행위

근거법령 주류면허법 제3조

- 제조장 방문객에게 판매가 아닌 무상 제공 목적으로 다른 종류의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용할 수 있는 식품 첨가 가능

대상 제조장 방문객

제공 형식 판매가 아닌 무상으로 제조장 내에서만 제공하여야 함



Q 주류제조자가 위탁할 수 있는 범위는?

A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동일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에게만 주류제조를 위탁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의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주류의 제조 또는 반출하는 것은 주류제조 정지 처분에 해당함

Q 탁·약주, 맥주를 제조할 경우 과실즙, 과즙농축액, 건조 과일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A 과실즙, 과즙농축액, 건조 과일을 사용할 경우 가공 전(착즙, 농축, 건조하기 전) 과실의 중량이 확인되면 사용이 가능함(품목제조보고서, 수입신고 필증 등 원료함량첨부)

Q 주류제조면허 취득 예정인데, 주류면허지원센터 지원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는지?

A 매년 주류제조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양조학 기초이론과 제조기술, 주질관리 방법, 주류분석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수시로 현장기술컨설팅을 통해 면허취득자가 요청할 경우 제조관리, 알코올분 분석방법, 제조방법작성 요령 등을 직접 현장을 찾아가 지원하고 있음

※ 위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주류면허지원센터 누리집 참조

Q 주류를 제조할 경우 마트에서 판매하는 담금주를 사용해도 되는지?

A 마트에서 판매하는 담금주는 최종소비자를 위한 가정용 주류로써 원료용 주류로 사용할 수 없으며,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담금주 제조자로부터 구매하여야 함

Q 제조방법신청과 출고전 주질감정을 함께 의뢰할 수 있는지?

A 주류 제조방법 의뢰 및 주질감정에 대해 동시 진행이 가능(신규면허자는 해당사항 없음)

Q 쌀과 밀을 주원료로 추천받은 탁주(지역특산주)에 입국, 팽화미의 사용이 가능한지?

A 직접 가공하거나 위탁업체에 쌀, 밀 등 원료를 제공하고 이를 가공시키는 경우 사용이 가능하나, 시중에 판매되는 입국, 팽화미는 지역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사용이 불가함

Q 제조방법 또는 주질감정 의뢰 이후 처리기간 및 절차는?

A 접수된 순서에 따라 통상 15일 이내 처리하며, 처리 결과(제조방법 승인 여부, 분석감정서 등)는 세무서에서 서면 발급

Q 사과를 원료로 과실주 생산하는 지역특산주면허자인데 포도 원료로 제조방법 신청이 가능한가?

A 「전통주산업법」에 따라 추천원료를 추가적으로 추천받아 제조방법 신청 가능

Q 개인적으로 알코올도수가 궁금하여 자가참고용으로 분석의뢰하는 것이 가능한지?

A 자가참고용 분석업무는 주류제조자가 주류의 품질유지 등 분석데이터를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류제조면허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음

Q 수탁자가 출고전 주질감정, 제조방법신청 등을 해야하는지?

A 주질감정, 제조방법신청서 등의 신고는 위탁자가 하여야 함

Q 출고전 주질감정 성적서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로 인정 가능한지?

A 제조일자가 표시된 완제품으로서, 유통 제품과 동일한 견본을 제출할 경우 가능함



CHAPTER

판매관리





1. 상표 신고

근거법령 주류면허법 제18조,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 상표 신고

- 주류 제조자가 상표를 사용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사용개시 2일 전까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외국으로 반출하는 주류의 상표내 글씨체나 색상 등을 단순 변경하는 경우와 수입주류를 「관세법」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는 신고 생략 가능

● 주류의 용도 구분 표시

- 맥주, 희석식소주, RFID 적용 주류 : “가정용”, “주세면세용”(또는 “면세주류”)
 - ※ 금속제 용기(can, keg), 종이제 용기(종이팩 포장재) 또는 합성수지제 용기(pet병)를 사용하거나, 100mL 이하의 용기를 사용하는 주류는 “가정용” 표시를 생략할 수 있으며 코팅병을 사용하는 경우 보조상표나 납세병마개에 표시할 수 있음
- 그 이외의 주류 : “주세면세용”(주세면세용을 제외한 주류의 용도 구분 표시 생략 가능)

④ 종이상자 등 외부포장을 사용할 경우

- ▶ 주류의 종이상자 등 외부포장에도 폭 3cm이상의 대각선 내에 “가정용”, “주세면세용”이라고 표시

2. 납세증명표지 사용

근거법령 주류면허법 시행령 제30조,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주세의 납부 또는 면세 사실을 증명하는 표지로서 납세증지를 용기에 붙이거나, 납세병마개, 납세증표를 사용하여야 함

● 납세증명표지 대상주류

- 청주, 맥주, 과실주,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 직전 주조연도 연간 반출량이 10,000킬로리터 이상인 탁주
- 직전 주조연도 연간 반출량이 1,000킬로리터 이상인 약주
- 5리터 초과 판매용기를 사용하는 탁주, 약주

⊕ 주세납세증지 사용의 생략

- ▶ 관할 세무서의 승인을 받아 자동계수기를 설치한 경우
- ▶ 제조장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 판매할 경우
- ▶ 전통주로서 총 반출량이 직전 주조연도 1,000킬로리터 미만 발효주류와 발효주형태 기타주류
- ▶ 전통주로서 총 반출량이 직전 주조연도 500킬로리터 미만 증류주류와 증류주형태 기타주류
- ▶ 해당 주조연도에 신규로 면허를 받아 제조하는 전통주
- ▶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주류 중 최초 제조면허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분기까지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주류

● 납세증지

-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으며, 파손하지 않고는 내용물을 마실 수 없도록 합성수지제의 비수용성 접착제로 부착

● 납세병마개 및 납세증표

- 반출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파손된 병마개 또는 유통 중 회수된 병마개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폐기승인을 받아야 함

▶ 납세병마개 제조자

- 모든 납세병마개 : 삼화왕관(주), 세왕금속공업(주)
- 플라스틱 납세병마개 : 팩트그룹클로저시스템즈코리아 주식회사, 신성이노텍(주), 주식회사 두일, 영진에스피공업(주), 삼천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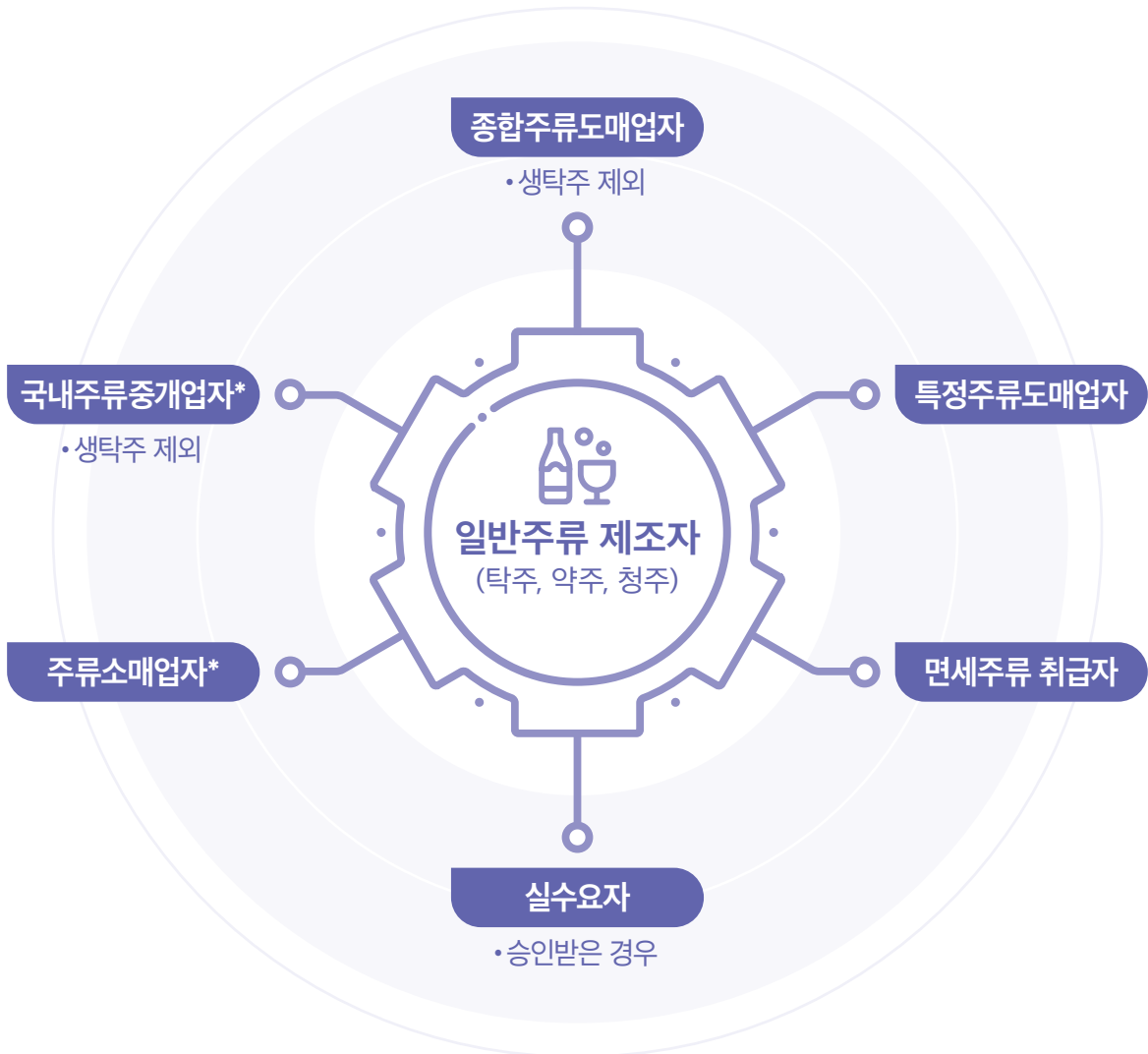
▶ 납세증표 제조자 : (주)아이에스엘

3. 주류의 유통

근거법령 주류면허법시행령 제8조, 영[별표제1호],
<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 일반주류 제조자(탁주, 약주, 청주)

- 인터넷판매(통신판매) 불가



* 국내주류중개업자 : 슈퍼연쇄점 본(지)부, 농·수·신탁 본(지)부

* 주류소매업자 : 유흥음식업자, 의제소매업자, 전문소매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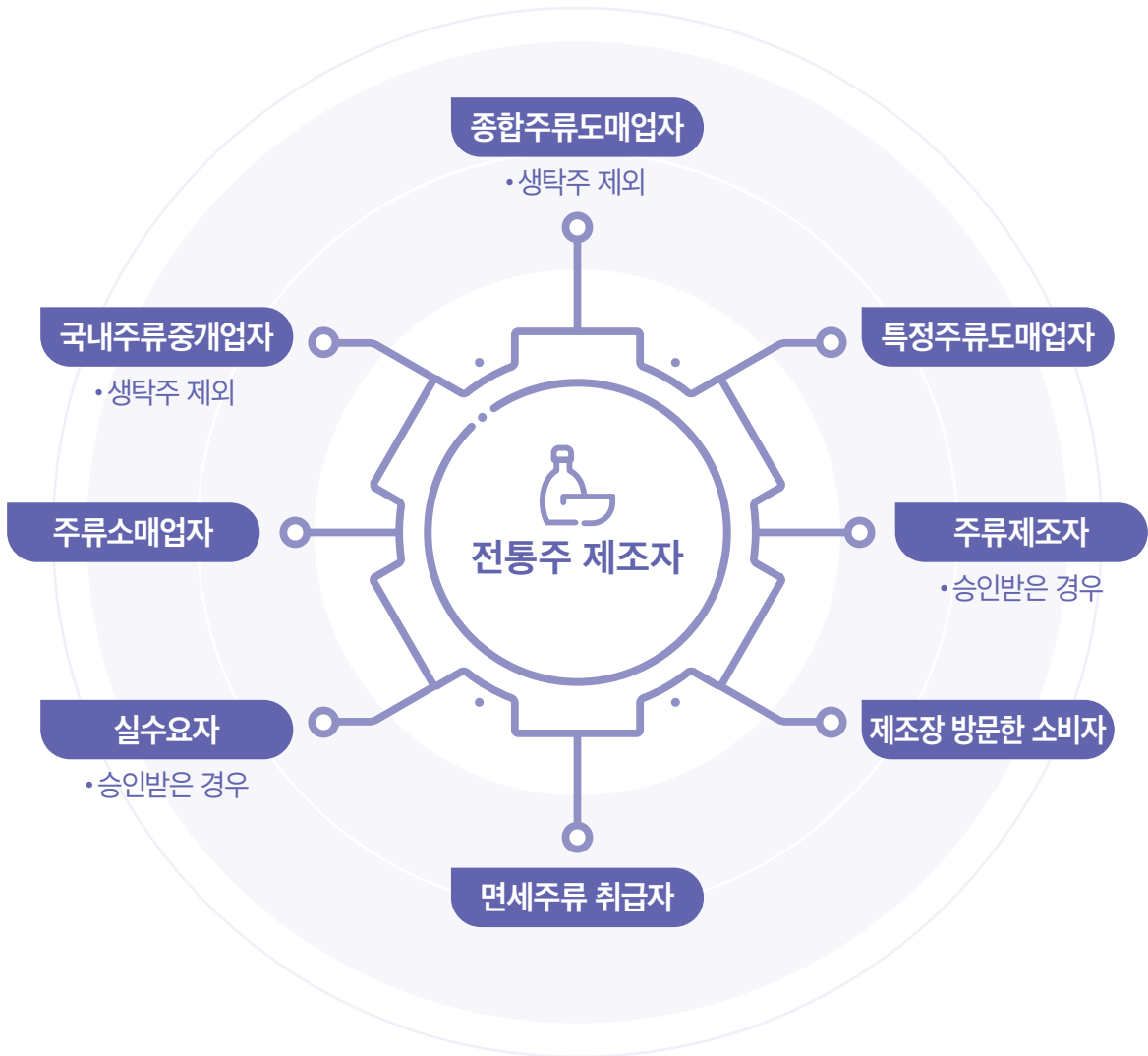
● 일반주류 제조자(탁주, 약주, 청주 이외)

- 인터넷판매(통신판매) 불가



● 전통주 제조자

- 인터넷판매(통신판매) 가능



● 소규모주류 제조자

- 인터넷판매(통신판매) 불가



* 최종소비자 : 1. 병입한 주류를 제조장에서 구입하는 고객
2. 해당 제조자가 직접 운영하는 영업장에서 마시는 고객

4. 주류의 통신판매

● 통신판매자

- 전통주 제조자* 중 관할 세무서장의 통신판매 승인을 받은 자
- *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직매장에서 전통주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전통주 제조자 포함

⊕ 통신판매자 준수사항

- ▶ 미성년자에게 판매 금지
- ▶ 통신판매 시작일 15일 전까지 주류통신판매 승인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 주류통신판매기록부를 작성·보관하여 주세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 통신판매하는 주류의 상표에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을 표기
- ▶ 「전자서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 아이핀,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으로 성인인증을 받은 자에 한하여 통신판매(해외에 판매할 경우는 해당없음)

● 통신판매 수단

- 우체국을 방문하여 주문하는 방식
- 전통주 제조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shop.g2b.go.kr>)
-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해외 판매 전문 온라인쇼핑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의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사이버몰인 인터넷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앱
- 전통주 제조자의 제조장이 속하는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전통주 제조자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https://ilovegohyang.go.kr>)

⊕ 통신판매 미승인자의 인터넷 사이트 표시금지 사항

- ▶ 배송, 결제방법, 계좌번호, 주문전화번호 등 판매 관련 정보
- ▶ 쇼핑백, 장바구니 등의 기능

5. 과세표준 및 세율

근거법령 주세법 제7조, 8조, 15조, 주세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6조
주류면허법 제18조, 영 제23조, 규칙 제7조, 교육세법 제5조, <기준판매비율 고시>

과세표준

종량세 주정, 탁주 및 맥주 :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한 수량

종가세 주정, 탁주 및 맥주 외의 주류 :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의 가격(주세액 제외)

- 주류제조장에서 마신 경우에도 반출로 간주

용기대금 및 포장비용

▶ 주류가격에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포함하나, 아래의 경우에는 제외

- 주류를 넣을 목적으로 특별히 제조된 도자기병과 이를 포장하기 위한 포장물의 가격
- 용기 또는 포장에 붙여 반출되는 전자인식표의 가격
- 전통주에 사용되는 모든 용기대금과 포장비용

과세표준의 계산

- 주류의 수량은 주류제조장에서 반출한 수량으로 산정

- 주류의 가격은 기준판매비율과 제조장판매가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함

구분	발효주류			증류주류					기타 주류
	약주	청주	과실주	소주	위스키	브랜드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준판매비율 (2026~2027)	21.1%	23.5%	20.0%	23.2%	28.0%	11.2%	21.3%	22.7%	18.0%

세율

구분	발효주류				증류주류	기타주류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맥주	소주, 위스키, 브랜드, 일반증류주, 리큐르	발효주	증류주 혼성주
주세율	1kL당 44,400원	30%	30%	1kL당 885,700원	72%	30%	72%
교육세율	-	-	10%	30%	30%	10%	30%
부가세율	10%						

※ 교육세가 붙는 경감세율적용대상주류의 경우 교육세율은 주세의 10%적용

※ 별도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판매용기로 2026.12.31. 이전에 반출하는 맥주는 주세의 80%적용

주류가격 신고

- 탁주 및 맥주를 제외한 주류에 대하여 가격 변경일(신규로 제조한 경우 반출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주류 가격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주세의 경감

< 전통주 경감세율 적용 >

- ▶ 발효주류(직전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수량을 기준으로 1천킬로리터 이하로 제조)
 -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 수량 중 먼저 반출된 400킬로리터에 대하여 세율경감
 - ① 먼저 반출된 200kL 이하의 수량 : 100분의 50
 - ② ①의 수량이후 반출된 200kL 초과 400kL 이하의 수량 : 100분의 30
- ▶ 증류주류(직전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수량을 기준으로 500킬로리터 이하로 제조)
 -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 수량 중 먼저 반출된 200킬로리터에 대하여 세율경감
 - ① 먼저 반출된 100kL 이하의 수량 : 100분의 50
 - ② ①의 수량이후 반출된 100kL 초과 200kL 이하의 수량 : 100분의 30

경감세율적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경우

- ▶ 제조면허를 신규로 받은 경우 해당 주조연도에 제조하는 주류
- ▶ 최초로 반출수량 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 주조연도와 그 다음 2주조연도까지 제조하는주류

< 소규모 약주, 청주의 과세표준(가격) 경감 >

- ▶ 최종소비자, 제조자의 영업장,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자에 판매하는 경우
 - 통상의 제조수량에 따라 계산되는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제조원가의 10%)을 가산한 금액에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인 약주 및 청주 반출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 구분에 따른 가격비율을 곱한 금액
 - ① 먼저 반출된 5kL 이하의 수량: 100분의 60
 - ② ①의 수량이후 반출된 5kL 초과 수량 : 100분의 80
 - * 제조원가 = 원료비 + 부원료비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판매비 포함) 중 해당 주류에 배부되어야 할 부분으로 구성되는 총금액
- ▶ 슈퍼마켓, 편의점, 마트, 주류백화점에 판매하는 경우
 - 통상가격에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인 약주 및 청주 반출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 구분에 따른 가격비율을 곱한 금액
 - ① 먼저 반출된 5kL 이하의 수량 : 100분의 60
 - ② ①의 수량이후 반출된 5kL 초과 수량 : 100분의 80

< 소규모 탁주, 맥주의 과세표준(수량) 경감 >

- ▶ 소규모 탁주
 - 해당 주조연도에 제조장에서 실제 반출한 수량에 아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수량
 - ① 먼저 반출된 5kL 이하의 수량 : 100분의 60
 - ② ①의 수량 이후 반출된 5kL 초과 수량 : 100분의 80
- ▶ 소규모 맥주
 - 해당 주조연도에 제조장에서 실제 반출한 수량에 아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수량
 - ① 먼저 반출된 200kL 이하의 수량 : 100분의 40
 - ② ①의 수량이후 반출된 200kL 초과 500kL 이하의 수량 : 100분의 60
 - ③ ②의 수량이후 반출된 500kL 초과 수량 : 100분의 80
 - ④ 쌀 함량 20%이상인 맥주 : 반출수량 전체의 100분의 30



판매관리

Q 전통주 제조자는 다른 제조자의 주류를 통신판매할 수 있는지?

A 전통주 제조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직매장에서 다른 제조자의 전통주를 구입하여 통신 판매할 수 있음

Q 주류를 판매할 때 주류 전용 컵을 사은품으로 제공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A 주류를 판매할 때 제공하는 경품은 직전연도 주종별 주류 매출액의 1.5%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으며, 이때 경품의 가격은 주류 거래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Q 주류의 용도 구분 표시를 할 경우 활자크기는 상관이 없는지?

A 주류의 용도 구분 표시 시(가정용/주세면세용) 주류의 용량에 따라 용량이 300mL 미만이면 14포인트 이상, 300mL 이상이면 16포인트 이상, 500mL 이상이면 20포인트 이상, 1.8L 이상이면 24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함

Q 탁주는 종합주류도매업자나 국내주류중개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지?

A 탁주 중에서 살균탁주의 경우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국내주류중개업자에게도 판매할 수 있으나, 생탁주의 경우에는 판매할 수 없음

Q 약주 제조자인데 특별이벤트 기간 동안 제품 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할 경우 주세는 할인된 가격으로 계산하는지?

A 종가세 대상 주류의 경우 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주류가격은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해 판매하는 가격인 통상가격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기존의 가격을 할인하여 판매 하였더라도 통상가격으로 주세가 부과됨

Q 과실을 첨가한 일반증류주의 상표명으로 과실소주라고 표시할 수 있는지?

A 주류의 상표명은 주류의 종류에 어긋나는 것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주류구분에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소주”를 상표에 사용할 수 없음

Q 통신판매 가격이 통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기준은?

A 통신판매가 가능한 전통주의 경우 통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반출하는 경우 그 통상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함

Q 시험양조주류에 대한 주세납부 여부는?

A 시험 제조한 주류를 판매 또는 시음을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주세를 납부해야 함

Q 약주에 동동주 상표표시 가능한지?

A 동동주는 맑은 술을 떠내거나 걸러내지 아니하여 밥알이 동동 떠 있는 상태의 술로서 탁주에 한정되어 사용할 수 있는 전통술을 말하므로, 약주에는 동동주라는 표시를 할 수 없음

Q 주류의 세트포장비용과 판매마진이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A 주류에 대한 주세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주세액을 제외한 반출하는 때의 가격으로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포함하므로 주류의 세트포장비용과 판매마진은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됨(단, 전통주의 경우 세트포장비용은 제외됨)

Q 주류제조자 직매장 시설에 주류 이외의 제품 판매 시설로 공동사용 가능한지?

A “직매장”이란 주류의 제조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제조 또는 취득한 주류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주류 이외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직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보관·관리·판매할 수 있음

Q 일시적으로 한정된 지역 내에서 기존의 가격을 대폭 인하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주세의 과세표준 산정기준은?

A 무상 또는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를 과세표준의 산정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고,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판매하는 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하여야 함

VI

CHAPTER

기타안내





1. 주요 처벌사항

● 제조면허의 취소

근거법령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주류제조면허의 취소】

-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시설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보완명령을 받고 불이행 시)
- 제조범위, 준수사항 등의 면허조건을 위반한 경우
- 납세 위반, 금고형 처벌 등 면허발급의 제한사항에 해당된 경우
- 제조 또는 반출 정지처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다시 위반한 경우
- 납세증명표지를 위조·변조 또는 파손해서 사용하거나 가지고 있는 경우
- 제조장에서 제조면허를 받지 않은 주류를 제조한 경우
-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 타인과 동업(同業) 경영을 한 경우
- 주류 제조면허자가 부재자 또는 실종되었거나 법정대리인이 없는 무능력자인 경우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에 따른 추천요건을 위반한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1항 및 「조세범처벌법」 제10조 1항부터 3항까지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 모든 직매장 총매출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인 경우
 - 총 주류 매출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인 경우
- 「조세범처벌법」 제10조4항에 따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등을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 아래 구분에 따른 주류에 대한 주세를 포탈한 경우
 - 탁주: 500만원 이상
 - 탁주·맥주를 제외한 발효주류 및 기타주류: 500만원 이상
 - 주정 및 증류주류: 1천만원 이상
 - 맥주: 2천만원 이상
- 2주조연도(酒造年度)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제조하지 아니한 경우
- 1주조연도 중 3회 이상 주세를 포탈한 경우

● 제조 또는 반출의 정지

근거법령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주류의 제조 또는 반출의 정지】

-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8항을 위반하여 주류의 제조를 위탁하거나 위탁받은 경우, 위탁받은 주류를 재 위탁하는 경우
- 주류 제조 위탁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주류제조 위탁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주류의 규격(알코올분, 불휘발분, 첨가재료, 원료의 사용 등)을 위반하여 주류를 제조한 경우
- 「식품위생법」 등 위생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유해한 성분이 포함된 경우
- 제조장 이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제조장을 이전한 경우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주류 제조 원료의 종류 등의 지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장부 기록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직매장 포함)
- 「조세범처벌법」 제12조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 납세증명표지의 위·변조, 재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 등
- 주세법 제21조에 따라 담보의 제공 또는 납세보증주류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주세를 포탈하거나 주세 체납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을 초과한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5조1항 및 「조세범처벌법」 제10조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총매출금액의 1,000분의 5이상 1,000분의 50미만인 경우)

● 벌과금 대상

근거법령 조세범처벌법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
-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제조한 자
-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장부를 소각·파기·은닉한 자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자
-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은 자
-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
 - 납세증명표지를 재사용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
 - 납세증명표지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 위조하거나 변조한 납세증명표지를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교부한 자 등

● 과태료 부과대상

【근거법령】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과태료】 및 동 법 시행령 제43조【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 4

- 주세보전명령 관련 고시를 위반한 자
 -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 주류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 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 반출(판매) 감량기준 고시
 - 주정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 무면허로 제조한 주류, 납세증명표지가 붙어 있지 않은 주류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하는 자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검정을 받지 아니한 기계, 기구 또는 용기를 사용한 자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에 따른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2. 세무 안내

● 사업자등록

- 모든 사업자는 각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함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 주세

과세기간	신고대상	확정 신고 납부기간
1.1 ~ 3.31	매 분기 주류를 제조한 사업자	4.1~4.25
4.1 ~ 6.30		7.1~7.25
7.1 ~ 9.30		10.1~10.25
10.1 ~ 12.31		다음해 1.1~1.25

● 부가가치세

-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

사업자	과세기간	확정 신고대상	확정 신고 납부기간
일반과세자	제1기 1.1~ 6.30	1.1~ 6.30 까지 사업실적	7.1~7.25
	제2기 7.1~12.31	7.1~12.31 까지 사업실적	다음해 1.1~1.25

※ 법인사업자는 예정 신고·납부(4월, 10월) 및 확정 신고·납부(7월, 다음해 1월)를 모두 하여야 함

● 종합소득세

-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에 대하여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 매년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고, 다음해 5월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 법인세

- 법인이 사업연도 내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세를 신고·납부
- ※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법인은 다음해 3월말까지 신고·납부

3. 식품위생법 관련 사항

●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등록

- 식품 제조·가공업자로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을 하여야 함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별표14)의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등을 갖춘 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2 서식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신청

● 「식품위생법」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 「식품위생법」 제31조에 따라 식품(주류) 제조·가공업자는 각 주류별 정해진 자가품질검사 항목에 대해 6개월 마다 1회 이상 검사하고 검사결과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함
- 자가품질검사는 위탁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 「식품위생법」 관련 기타 준수사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별표 17)(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준수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

※ 기타 의무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https://foodsafetykorea.go.kr>) 확인



기타안내

Q 면허 없이 주류를 제조하였을 때 받는 처분은?

A 「조세범처벌법」제6조에 따라 면허 없이 주류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주종별 생산량에 따라 벌금의 양정액이 달라지며, 자세한 사항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별표 벌금상당액 부과기준을 참고하기 바람

Q 「주류면허법」 위반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모든 주류의 제조면허가 취소되는지?

A 시설기준 미달, 주세 보전을 위한 면허조건 위반, 2주조연도 이상 제조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류의 제조면허만 취소됨

Q 주류 제조면허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 시 주류제조면허 취소 여부는 ?

A 주류 제조면허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되는 것임

Q 주류 제조면허자가 면허를 사실상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A 주류 제조면허를 제3자에게 양도 임대하여 제3자가 제조 판매행위를 한 경우 면허취소와 함께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이 적용되는 것임

Q 주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A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무신고 제척기간은 7년으로 관할 세무서에서 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제척기한 내에 고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

Q 검정 받지 않은 용기를 사용하였을 때 받는 처분은?

A 「주류면허법」 제38조에 따라 검정 받지 않은 용기를 사용한 경우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에 처함

주류 제조장 현장확인 안내

시설구분	시설기준	시설 확인사항
건 물	담금실 (지역특산주)	▷ 주류의 종류별 면적 확보(제조장 평면도와 일치 확인)
		▷ 담금실에 사무공간, 계단, 보일러실, 화장실 등 제외 - 바닥 면적은 주류 종류별로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함
		▷ 증자기, 증류기 등 주류 제조에 필요한 설비공간 면적 포함
담금저장 제성용기	담금(발효)조, 제성조 총용량	▷ 용기검정 받기 전 용기 내 주류 또는 식품 등 일체 저장 금지
		▷ 용기 용량은 내측으로 측정
		▷ 용기는 주류의 종류별로 각각 갖춰야 함
		▷ 주류 용기는 용도별(발효조, 제성조 등)로 갖춰야 함(최소 2기)
		▷ 용기용량은 사업계획서 상의 제조예정수량과 비교하여 타당성이 인정되어야 함
		▷ 제조방법 상 주정을 사용하는 경우 주류 종류별로 별도의 주정저장조 구비
용기재질	용기	▷ 스테인리스스틸, 법랑, 유리, 합성수지, 오크통, 옹기 가능
		▷ 제조용기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주방용기, 고철, 10L 이하의 병(판매용기로 간주) - 제조장이 협소하여 배치 되지 못하거나, 겹쳐놓아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용기
		▷ 합성수지(PE)용기는 제조장에 합성수지시험성적서 구비 확인 (20~50% 에탄올 용출시험 반드시 포함)
부대시설	여과시설 세병시설 병입시설 타전시설	▷ 제조방법과 상관없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함

시설구분	시설기준	시설 확인사항
시험시설	간이증류기	▷ 알코올분 측정을 위한 증류용 실험용 기구
	주정계	▷ 진동식 밀도계를 사용할 경우 주정계로 인정
	온도계	▷ 0.2℃ 눈금 확인 가능한 탐침온도계 인정
	현미경, 항온항습기	▷ 시설기준 규격 이상일 것
살균시설	살균기 또는 살균조	▷ 완전살균에 필요한 제반시설 갖춰야 함
	살균 실험실	▷ 살균실험실은 파티션, 벽 등으로 분리
	살균 시험기구	▷ 무균상자(클린벤치), 항온기(항온실 불가)
작업장	위생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시설과 분리	▷ 교육장, 판매장 등은 벽, 층으로 공간 분리 - 별도의 출입문 사용 - 작업장 내부를 통해 교육장, 판매장 등으로 이동불가
		▷ 소규모주류제조자는 작업장과 판매장소 명확히 분리
		▷ 작업장에 주류제조와 관계없는 물품 적재 시 위반 - 식초의 경우 폐기물로 간주
기타시설		▷ 증류기 크기는 연간 제조예정수량을 기준으로 발효용기 및 가동 주기 등을 감안하여 타당성이 인정되어야 함
그 외	제조장의 범위	▷ 제조장 내 공용도로 및 인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불가 예시1) 지식산업센터(101, 102호 제조장) - 공용복도를 이용한 제조장 간 이동 금지
		예시2) 다른 사업자 내부에 제조장을 마련한 경우 - A사업자가 외부로 나갈 때 다른 사업장(B사업자)을 거쳐야 하는 경우 불가

본 안내서는 주류 제조 면허와 관련하여
주류 제조면허자(취득 예정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내용을 정리한 자료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개인이나 단체가 상업적 용도 등
기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 등에 따라 세부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본 안내서의 내용을 활용할 때에는
반드시 현행 법령 및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자의 내용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전자도서관-발간책자)과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누리집(자료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